가상자산업권법TF 3차 국회 세미나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2021.4.26(월) 오전 10:00~12:00









1.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 개회사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

지난달 창간 3주년을 맞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기 혹은 다단계 프로젝트들을 고발하는 기사를 가장 앞장서서 보도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기사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또 이런 기사들은 송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고 모두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큰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은 국내 언론들이 유가 보도자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꾼들이 유가 보도자료 상품을 이용해 허위, 과장 정보를 버젓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사업관행으로 치부하며 가상자산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아무 검증도 없이 기사처럼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유가 보도자료 발행을 제안해왔지만,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단 한 번도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한 사실만 기사로 발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돈 되는 제안은 마다하고 있으니 사업적으로 보면 실패할 모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건전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행동은 분명히 처벌하고 좋은 행동은 장려하는 규제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이어서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제정되는 날까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계신 네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김병욱 의원님,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3. 개회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논의하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업권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 주요국가들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며, 지난 1월 19일 미국의 동향을 분석한데 이어 오늘은 아시아의 제도와 동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매스뮤추얼 등 주요 금융사뿐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하버드, 예일, 브라운과 같은 미국 유명 대학 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은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의 금융 중심가(main street)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환점으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의 절반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홍콩의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STO) 방침, 일본의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규범인 '자금결제법'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등, 아시아 주변국들의 제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단점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업권법을 함께 구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유신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업권법 제정에 유익한 내용이 제시되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1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bkl

CONTENTS

eaed & Confiden

- I. 싱가포르의 Digital Asset 규제 개관
- II. DBS Digital Exchange관련 규제
- III.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의 암호화폐파생상품 규제
- IV. 싱가포르 규제에 대한 평가

2

I. 싱가포르의 Digital Asset 규제 개관

bkl

Digital Token Offering
Securities & Futures Act
Financial Advisers Act

A Guide to

- 2017. 8.1 MAS 발표/ 법적효력무, SFA와 FAA등 법령 대체하지 않음
- Digital token중 SFA상 자본시장상품(증권, 집합투자기구, 선물계약, 레버리지 외환거 래계약)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Digital Token의 Prospectus제출 의무등 공모규정
- Organised Market에 대한 Approved Exchange와 Recognised Market Operator
- Capital Market Service License/ Financial Adviser License

Payment Service Act

- 2019.1.14 PSA제정, 지급수단인 Cryptocurrency를 Digital Payment Token에 포함, 정의
- DPT를 이용한 7가지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AML/CTF의무를 준수해야 함

II. DBS Digital Exchange 관련규제

bkl

fil sto거래RIVIO

- SFA, SFA Regulation
- · Recognised Market Operator
- Approved Exchange가 아님
- 발행플랫폼&거래플랫폼
- 자본상품서비스 라이선스
- 투자설명서 제출 면제
- 기관투자자와
- Accredited 투자자 Only

디지털통화거래소

- 암호통화와 법정화폐거래
- 네종류 법화 SD, USD, HKD, JPY
- 네종류암호통화 BTC, EHT, BTC CASH, XRP
- · MAS Notice on AML/CTF
- 그외 경찰, 규제기관등 규제

Custody

MAS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직접규제 않음

• DBS Digital Exchange 책임으로 custodian선정하라고 함

4

SFA의 관련 내용

bkl

1. Organised Market

증권등을 교환, 매매하는 청약 등이 중앙화 기반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 전자적 설비.

그 청약등은 증권등의 교환과 매매의 청약을 하거나 그 승낙으로 귀결되는 것을 의도함

2. Organised Market의 운영자 두 유형 :

Approved Exchange & Recognised Market Operator 아래 의무들을 공통적으로 가지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음 - MAS에 대한 중요 사항 통지의무, 정기 보고의무, -리스크 관리의무, 적절한 기록유지의무

- -사용자정보 비밀유지의무
- -MAS에 대한 협조의무

RMO 라이선스 관련 MAS의 기준

bkl

ed & Confidential

- * 고려요소
- 1. 국제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에 부합하는 Market구조와 운용
- 2. 신청인의 경험과 실적, 경영전문성, 재무건전성
- 3. 최소한의 재무요건충족능력
- 4. 위험관리와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5. 사업계획과 예측
- 6. 기업지배구조, 적합성
- 소요기간 : 신청후 약 6개월 후 결정, Case by case로 결정
- 갱신필요없음

6

II. DBS Digital Exchange :MRO 신청의 주요내용

bkl

- 신청회사에 대한 일반 기업정보
- _ Markets and Operations
- 1.신청시장의 유형: 증권(주식,사채)... 기타
 - 2 거래시간
 - 3.거래될계약에대한세부정보
 - 5.거래주문,청약방법과 matching 방법등
 - 6. 구속력있는 계약인지, 단순한 게시판인지
 - 7.청산방식

Ⅱ. DBS Digital Exchange :MRO 신청의 주요내용

bkl

- 재무정보
- __ 신청회사의 주요경영진과 임원의 적정성
- 신청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과 적정성
- 규제준수와 MAS에 대한 의무준수 (AML/OFT 관련 Notice준수)
- Risk Management
- Market Integrity: 불공정거래,의심활동,시장부정행위를 감시할책임. 가격조작, 내부자 거래, 중요정보의 부실기재나 사기적 행위 추적 장치 필요.

8

II. DBS Digital Exchange :MRO 신청의 주요내용

bkl

- Membership과참여자들
- 회원제 여부
- 회원의 유형(일반 거래회원, 우선거래회원, 블록거래 회원등)
- 회원 자신만의 계정거래,고객위한 거래인지 여부
- 신청회사와 같은 국가의 투자자만 허용할지 타국가의 투자자도 허용할지
- 참여자의 유형 기재(기관, accredited, retail 등)

a

Ⅲ DBS Digital Exchange: 은행이설립한의미

bkl

- 자본시장의 재구성
- 싱가폴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과 법정통화화의 거래를 main stream으로 받아들이는 준비
- 디지털 자산 다양한 거래를 완전 통합한 생태계로서 처음
- * 싱가폴거래소(SGX)가 10% 지분출자

10

III. SGX의 암호화폐 파생상품규제

파생거래의 위험성

bkl

Proposed Regulatory Approach for 규제대상의 범위 Derivatives 2020.5발표 -Approved Exchange에서 거래되는 2019.11.2- 12. 20까지 파생상품에 한해서 규제 -비인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onsultation paper 파생상품이나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발표, response받아 그에 대한 입장발표 파생상품은 제외(금지하지는 않음) VS Retail Investor에 대한주의환기 커스터디안의 선정 소매 투자자의 거래를 금지하지는 -MAS가 직접규제하지 않음 암호화폐와 그 파생상품의 -인가거래소가 커스터디안을 선정할 가격변동성과 본질적으로 평가하기 책임을 지고, 커스터디안이 다른 증권의 -어려운 점을 주의환기 커스터디안과 유사한 정도로 적절하게 지속적 교육 : 사기적 비규거래소와 규제될 것을 요구함.

IV. 싱가포르규제에 대한평가

bkl



12

bkl

감사합니다

Any Questions? jb.park@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년 04월 26일 박종백 변호사

발표 2

홍콩 법규화 금융기관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콩 규제와 금융기관 동향

2021. 4.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1

SHIN&KIM

목 차

- I. OSL 디지털시큐리티즈 증권거래 라이선스 취득
- Ⅱ. 홍콩 증권선물위원회_(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_(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I. OSL 디지털시큐리티즈 증권거래 라이선스 취득

3

SHIN&KIM

I. OSL 디지털시큐리티즈 증권거래 라이선스 취득

- ▶ BC그룹 산하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거래소)
- 2020년 12월 15일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SFC)으로부터 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에 정의되어 있는 Regulated Activities 중 Type 1(증권거래) 과 Type 7(자동 거래 서비스; automated trading service)을 이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고 공지

Schedule 5 of Securitie and Futures Ordinance("SFO"); Regulated Activities TYPE 1 • • • dealing in securities

TYPE ② · · · dealing in futures contracts

TYPE 3 • • • 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TYPE 4 • • • advising on securities

TYPE (5) · · · advising on futures contracts

TYPE 6 . . . 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TYPE 7 ... 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TYPE 8 • • • securities margin financing

TYPE 9 · · · asset management

4 | 법무법인(유)세종

I. OSL 디지털시큐리티즈 증권거래 라이선스 취득

♪ SFC 의 License 부여 권한은 SFO 116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SFO 116조 1항

The Commission may, upon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grant to the applicant a licence to carry on one or more than one regulated activity.



5 | 법무법인(유) 세종

5

SHIN&KIM

I. OSL 디지털시큐리티즈 증권거래 라이선스 취득

▶ 2021년 3월 15일, 거래데스크를 통해 첫번째 고객 거래가 성사되면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6 | 법무법인(유)세종

SHIN & KIM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7

SHIN&KIM

-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 1 FATF 권고안 이후 발표된 규정(2019년 11월 6일)
 - 2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에 SFO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
 - 3 적어도 하나 이상의 security token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적용
 - 4 Non-security token만 거래하거나 P2P 거래는 대상이 아님
 - security virtual asset과 non-security virtual assert 의 거래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는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8 | 법무법인(유) 세종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SFC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

▶ 직업적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일 것

"Professional Investor"는 잘 알려진 증권거래 회사, ATS 제공 회사, 투자회사 혹은 그 중개인, 정부기관, 보험회사 등을 포함

- ▶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약관"을 준수할 것
- ▶ 새로운 서비스나 활동의 개시 또는 기존의 서비스나 활동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에 SFC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것
- ▶ SFC에 매월 월간 리포트를 제출할 것
- ▶ SFC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독립된 전문 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그 활동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허가 요건 및 모든 법률/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9 | 법무법인(유)세종

9

SHIN&KIM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1 가상 자산의 안전한 관리

●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가상 자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Associated Entity") 이며 홍콩에서 설립된 trust 에 보관하여야함.

위 trust 는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s (Cap.615) 에서 요구하는 "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license"라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해당 플랫폼 업자와 Associated Entity 는 고객의 가상 자산 중 98%를 cold wallet에 저장하여야 하며 2%나 그 이하 만을 hot wallet에 저장할 수 있음. 또한 절도, 사기 그리고 다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상 자산의 분실을 막기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10 | 법무법인(유) 세종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2 Know Your Client

- 일반사항
 - 고객의 진정하고 완전한 신원 / 재정상황 / 투자경험 / 투자목적에 대한 확인
 - 고객 관련 추가정보(IP 주소와 관련한 time stamp, 위치 데이터, 기기 식별자, 가상자산 지갑 주소 및 거래 해쉬)의 수집
 - 고객의 IP주소가 VPN 등의 수단으로 위장되어 있을 경우, 실제 IP 주소를 확보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수상한 컨택 정보의 경우 서비스 거절, 연기 또는 해지
- 플랫폼의 고객이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해당 플랫폼 운영자가 보장하여야 함
 - 가상자산 관련 training 또는 관련 과정 수강 여부
 - 가상자산 관련 전, 현직 업무경험
 -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경험: 최근 3년간 5회 이상인 경우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

11 | 법무법인(유) 세종

11

SHIN&KIM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2 Know Your Client

▶ 플랫폼 운영자의 고객에 대한 Training 제공의무

▶ 고객의 재무상황에 따른 거래한도(trading limit)의 설정

하나의 고객이 수개의 계좌 개설 금지



12 | 법무법인(유)세종

II.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ML/CFT

- ♪ FATF 권고안 준수
- ♪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이용
 - 프록시, 확인되지 않거나 고위험의 IP 지리적 위치 사용, 이회용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사용, 거래를 위해 상시적으로 기기를 바꾸는 경우
 - "다크넷" 마켓에서의 거래 등 오염된 지갑 주소를 사용한 거래, 텀블러와 관련한 거래
 - 고위험 또는 익명성이 큰 가상자산의 거래(예를 들어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래상세정보를 감추는 가상자산)
- ▶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
 - 손상 또는 오염된 지갑 주소를 사용한 거래를 확인하고 금지
 - 손상 또는 오염·사기, 신원도용, 몸값 갈취 등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정 가상자산의 on-chain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
 -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토

13 | 법무법인(유)세종

13

SHIN&KIM

감사합니다

www.shinkim.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EL: 02 316 4114 | FAX: 02 756 6226 | www.shinkim.com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진 하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목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압격히 급지됩니다. 본 자료와 권한하여 있은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저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가 배합니다.



일본 가상시장 현황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일본의 가상자산업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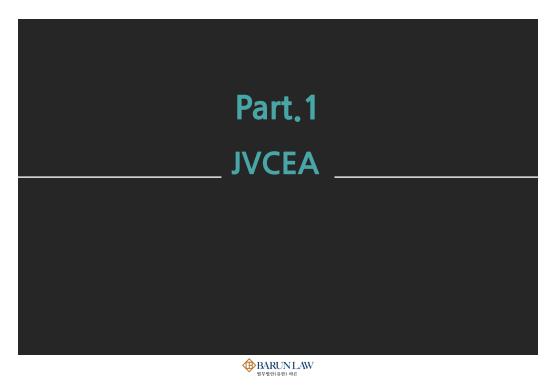


1

일본 가상자산업계 현황

- 1. JVCEA
- 2. 일본STO협회
- 3. 업계 현황
- 4. 결론

INDEX



3

1. JVCEA

1.1 개관

- ✓ 금융 상품 거래법 제 7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 금융 상품 거래업 협회"로 인정을 받은 자율 규제 기구
- ✓ 현재 자금 결제법에 근거하는 「인정 자금 결제 사업자 협회」의 지위도 겸하고 있음





1. JVCEA

1.2 업무

- ✓ 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자율 규제 규칙의 제정
 - 회원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회원에 대한지도, 권고 및 처분
 - 회원의 업무 상담
 - 암호화 자산 교환 업에 관한 불만 접수
 -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암호화 자산 관련 거래에 관한 통계 조사
 - •기타 협회의 정관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하는 암호화 자산 교환 업체 및 암호 자산 관련 파생 상품 거래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수행



5

1. JVCEA

1.3 회원구성

- ✓ 제1종 회원
 - 암호 자산 교환업자
 - 암호화 자산 관련 파생 상품 거래업자 등
- ✓ 제2종 회원
 - 암호 자산 교환업자
 - 암호 자산 관련 파생 상품 거래업자가 되기 위한 등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등록 신청을 예정하는 사업자
- ✓ 제3종 회원
 - 기타 협회 목적에 동참하는 자



1. JVCEA

1.4 회원사

✓ 제1종 회원사 31개사

会社名	住所	
株式会社マネーパートナーズ	東京都港区六本木 3-2- 1住友不動産六本木グランドタワー 33階	
株式会社bitFlyer	東京都港区赤坂 9-7- 1ミッドタウン・タワー	
QUOINE株式会社	東京都千代田区神田錦町3-17廣瀬ビル4階	
ビットバンク株式会社	東京都品川区西五反田7-20- 9KDX西五反田ビル7F	
SBI VC トレード株式会社	東京都港区六本木一丁目6番1号	
GMOコイン株式会社	東京都渋谷区道玄坂一丁目2番3号	



7

1. JVCEA

1.4 회원사

- ✓ 제2종 회원사 6개사
- ✓ 제2종 회원은 코인베이스, 도쿄해시, e워런트증권주식회사, 트레이더스 증권주식회사, IG증권 주식회사임
- ✓ 3개가 증권회사
- ✓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진출을 위해 대기 중임

会社名	住所	
Coinbase株式会社	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一丁目6番1号 大手町ビル4階FINOLAB	
東京ハッシュ株式会社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丁目3番2号	
株式会社ガイア	大阪市西区江戸堀2-1-1 江戸堀センタービル9F	
<u>8ワラント証券株式会社</u>	東京都港区南青山五丁目11番9号 レキシントン青山3階	





BARUN LAW

9

2. JSTOA

2.1 개관

- ✓ 일본 STO협회(Japan Security Token Offering Association)는 SBI그룹이 주도하는 연합
- ✓ 설립 회원은 SBI증권, 라쿠텐증권, 가부닷컴, 모넥스증권, 다이와증권, 노무라증권 등 증권사임
- ✓ 금융 상품 거래법 제 7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 금융 상품 거래업 협회"로 인정을 받은 자율 규제 기구





2. JSTOA

2.2 목적

- ✓ 자율 규제 업무 등을 통해 전자 기록 이전 권리를 비롯한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함
- ✓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상품 거래업의 건전한 발전
- ✓ "금융 자본 시장 활성화 · 고급 산업의 육성 · 글로벌 관점에서의 경쟁력 유지 "를 추진
- ✓ 증권형 토큰의 홍보, 보급 계발에 노력할 목적으로 설립.



11

2. JSTOA

2.3 규칙 등

- ✓ 정관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칙
- ✓ 전자기록 이전권리 등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 ✓ 전자기록 이전 권리의 모집의 취급등에 환한 규칙
- ✓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 규칙
- ✔ 내부관리 총괄 책임자등에 관한 규칙
- ✓ 고객 자산의 분리 관리의 적정한 실시에 관한 규칙
- ✓ 금융상품 중개업자에 관한 규칙
- ✓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칙
- ✔ 전자기록 이전권리등의 발행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 지침



2. JSTOA

2.4 업무

- ✓ "전자 기록 이전 권리의 발행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의 지침" 제정 및 검토 워킹 그룹 운영
- ✓토큰의 발행, 배포, 이전제한 및 결제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작성
- ✓주관사는 노무라 홀딩스, 위원은 총 50개사 주요사는 아래와 같음
 - ✔앤더슨 모리 법률 사무소 , 사단 법인 일본 증권형 토큰 협회
 - ▼엔디는 모디 입할 사무요, 사진 입인 글은 증권형 모든 함 ✓au 카부고무 증권 주식회사, SMBC 닛코 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SBI 증권, 주식회사 Datachain ✓주식회사 BOOSTRY, 주식회사 LayerX ✓클리포드 찬스 법률 사무소, 스탠다드 캐피탈 주식회사 ✓Securitize Japan 주식회사, 창 사토 법률 사무소

 - ✓미츠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주식회사



13

2. JSTOA

2.5 회원사

√총 12개 금융회사

auカブコム証券株式会社 au카부코무증권주식회사	https://kabu.com/
SMBC日興証券株式会社 SMBC 닛코 증권주식회사	https://www.smbcnikko.co.jp/
株式会社SBI証券 주식회사 SBI증권	https://www.sbisec.co.jp/
大和証券株式会社 다이와증권주식회사	https://www.daiwa.jp/
東海東京証券株式会社 동해동경증권주식회사	http://www.tokaitokyo.co.jp/
野村證券株式会社 노무라증권주식회사	https://www.nomura.co.jp/
Hash DasH株式会社 해쉬대쉬주식회사	https://www.hashdash.co.jp/



2. JSTOA

2.5 회원사

√총 12개 금융회사

マネックス証券株式会社 마넥스증권주식회사	https://www.monex.co.jp/
みずほ証券株式会社 미즈호증권주식회사	https://www.mizuho-sc.com/
三井住友信託銀行株式会社 미츠이스미모토신탁은행주식회사	https://www.smtb.jp/
三菱UFJ信託銀行株式会社 미쓰비시UFJ신탁은행주식회사	https://www.tr.mufg.jp/
楽天証券株式会社 라쿠텐증권주식회사	https://www.rakuten-sec.co.jp/







개관

- ✓IT기업,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MUFG 은행, 노무라 홀딩스, 다이와 증권, 다이이치 생명보험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디커렛(DeCurret)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대형 증권사인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2019년 10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 일본 STO협회를 창설함
 - •노무라홀딩스는 콜드월렛 제작업체인 레저(Ledger)와 함께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마이누(Komainu)를 설립하였고, 미국 스마트계약 감사기업인 퀀트스탬프에도 투자하였음



17

3. 업계 현황

라쿠텐

-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은 2015년부터 미국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바 있음
-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민나노 비트코인'(みんなのBitcoin)을 27억원에 인수하여 2019년 8월 거래소 이름을
- '라쿠텐 월릿'으로 바꾼 후 서비스를 제공
- ✔라쿠텐은 기존 사업과 거래소를 연계해 엔화뿐만 아니라 라쿠텐 포인트로도 비트코인 등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투자자 자금은 인터넷은행인 '라쿠텐 은행'의 예금 계좌에 보관되며, 이 계좌의 감사는 라쿠텐 신탁이 맡고 있음

출처 :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빅플레이어들 라쿠텐, 야후저팬, 노무라, SBI;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03



미스이스미모토신탁은행

- ▼2021. 3.31. 발표에 따르면, 자산유동화기구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이용해 증권형 토큰 발행 파일럿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실물주식"의 소유권 증명 서류를 증권화 토큰으로 전환한 시도는 일본 최초임
-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수하여 발행하였고 '시큐리티즈(Securitize)'의 일본 지사가 시범 발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미쓰이스미모토 신탁, 일본 최초 증권형 토큰 테스트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29



19

3. 업계 현황

SBI홀딩스

✓2020. 10 . SBI e-Sports 회사의 사채를 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하였고 SBI 홀딩스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음
 ✓2020. 12. 8. 싱가포르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발행, 거래, 저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SIX Digital Exchange와 함께 합작투자법인 설립



SBI홀딩스

- ✓ 2021. 3. 26. 주식회사 SBI증권은 STO로 발행된 주식의 교환을 위해 일본 최초로 금융 상품 거래법의
- "전자 기록 이전 유가증권표시 권리" 이용 등의 취급에 관한 변경 등록을 완료
- ✔금융상품거래법상 표시

상호 등	주식회사 SBI 증권 금융 상품 거래업자
등록 번호	관동 재무 국장 (금 인) 제 44 호
	일 본 중 권 업 협회 일 반 사 단 법인 금융 선물 거 래 업 협회, 일반 사단 법인 둘째 종 금융 상품 거래업 협회 일반 사단 법인 일본 STO 협회



21

3. 업계 현황

SBI홀딩스

- ✓ SBI 홀딩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과 2021 년 3 월 26 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21 년 4 월 1 일에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 (이하 "ODX") "를 공동으로 설립
 ✓ 합작 회사의 목적
 - •ODX 는 증권형 토큰 (금융 상품 거래 법상 "전자 기록 이전 유가 증권 표시 권리"에 근거)을 취급하는 일본 내 최초의 PTS (사설 거래 시스템)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 ❖PTS란, 증권회사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야간 등 도쿄증권거래소 운영시간 이외에도 주식매매가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거래소



합작회사 개요

이름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 (Osaka Digital Exchange Co., Ltd.)	
본점	오사카 부 오사카시 키타 구 도지마 니 쵸메 2 번 2 호	
설 립 일	2021 년 4 월 1 일	
임원	대표 이사 회장 키 타 오 吉 孝 (SBI 홀 딩 스 대표 이사 朏 仁 雄 (SBI 증 권 임 원 ST 이사 오 가 와 히 로 유 키 (SBI PTS 홀 이사 다 나 勝 敎 (미 쓰 이 스 미 토 모 파 이 이사 우 도 真 丞 (SMBC 닛 코 증 권 감사 나카노 코우지 (SBI PTS 홀딩스 감사)	O 사업 추진 부장) 딩스 대표 이사 사장) 낸셜 그룹 집행 역 전무)
자본금	2 역 5 천만 엔	
자본 준비금	2 억 5 천만 엔	
주주 구성	SBI PTS 홀딩스 주식회사 60 %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40 %	
사업 내용	주식과 증권형 토큰을 취급 PTS의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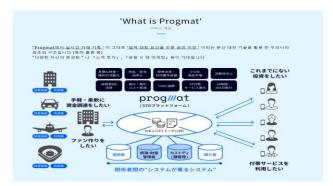
23

3. 업계 현황

미츠비시UFJ 파이낸셜그룹(MUFG)

✔ Progmat(프로그마)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자금결제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증권 플랫폼을 개발하여

출시 준비 중



출처: https://www.tr.mufg.jp/progmat/#contents_concepts



미츠비시UFJ 파이낸셜그룹(MUFG)

- •프로그마는 미츠비시UFJ 신탁은행이 노드를 갖고 블록체인 상 데이터를 원부 정보로 취급할 예정임
- •스마트컨트랙을 통해 결제와 청산업무를 자동화하여 결제후 청산일까지 기간을 없애도록 할 예정임
- •업무 비용 절감을 통해 한계 비용을 0로 만들어서 기존에 자산화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증권사나 자금결제자 영업일과 무관하게 전자동화되므로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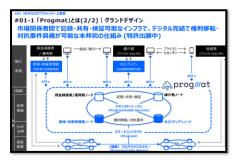


25

3. 업계 현황

미츠비시UFJ 파이낸셜그룹(MUFG)

- ✔모금운영자 노드, 매개자 노드, 커스터디
- 노드(키관리), 원부재산 관리 노드(신탁은행) 4개의 노드로 운영
-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임.
- ✔운영자가 노드와 사이에서 API를 통해 주고받은 정보에 기반하여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짐



(출처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0/data/rel201215c4.pdf)



미츠비시UF」파이낸셜그룹(MUFG)

 ✔ Progmat(프로그마)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자금결제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증권 플랫폼을 개발 중
 •신탁은행이 신탁원부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탁은행이 노드로 참여하여 전자적인 권리자 정보와 법적인 권리의 이전을 이행해야만 현행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를 충족한다는 설명임
 •또한 자산을 신탁은행에서 관리하므로 토큰발행자인 위탁자가 도산하더라도 도산격리 등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설명

출처: なぜデジタル証券を「信託銀行」が主導するのか――MUFGの取り組み(왜 디지털 증권을 "신탁 은행 '이 주도 하는가――MUFG 노력 (상, 하): https://www.coindeskiapan.com/32662/







4. 결론 3-1 원칙

✓ 일본의 경우 현재 약 31개 거래소가 회원사로 되어 있고 증권사 3개 및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상태임

- ✓ 현재 STO 를 위한 준비도 활발하여 금융상품거래법상 전자기록이전권리에 근거한 STO 가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적기록 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규칙도 만들고 있음
- ✓ SBI홀딩스나 미츠미시 UFJ신탁은행 등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여 자산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음



29

4. 결론 3-1 원칙

 ✓ 우리나라는 현재 4개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실명확인계정을 확보한 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는 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 조성되기는 힘든 상황임



4. 결론 3-1 원칙

✓ 우리나라에서의 STO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자산유동화플랫폼과 지역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세종텔레콤의 부동산자산유동화 플랫폼등의 사업이 존재함

- ✓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증권형 토큰 이전 교환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며
-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만 전자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므로 현재 법령상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함
-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핀테크 강국으로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일본 법규 현황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일본 가상자산 관련 법규 현황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종수



1

목 차

I. 1차 개정 (2017. 4.)

자금결제법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II. 2차 개정 (2020. 5.)

2차 개정 경위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2017. 4.)

■ 자금결제법

- 마운트콕스 해킹 사건 등으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 증대
- 가상통화의 정의 (동법 제2조 제5호)
 - 물품을 구입 혹은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불특정 인을 상대방으로 매수 및 매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 기타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에 한하여 본국통화, 외국통화 및 통화표시자산을 제외)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것
 -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전호의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것
- 가상통화를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

3

3

1차 개정 (2017. 4.)

■ 자금결제법

- 가상화폐 교환 사업의 정의 (동법 2조 7항)
 - 가상 통화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 통화 교환
 - 위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 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 통화의 관리
- 가상화폐 교환업자의 등록 (동법 63조의2)
 - 등록거부사유 규정 (동법 제63조의 5)
 - 정보의 안전관리, 위탁처에 대한 지도, 정보제공 등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조치, 이용자재산의 분리 관리 등의 업무상 의무 규정(동법 제63조의8~제63조의12)
 - 재무규제, 감사, 당국에 의한 검사, 의무개선정지명령, 등록취소 등 규정(동법 제63조의13~19)

4

1차 개정 (2017. 4.)

-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 법률이 적용되는 특정사업자에 가상화폐교환업자 포함(동법 제2조 제2호 31호)
 - 본인확인의무
 - 계좌개설
 - 200만 엔 이상의 가상화폐 교환
 - 10만엔 이상의 가상화폐 이전
 - 거래기록 보존
 - 의심거래 당국신고

5

5

2차 개정 (2020. 5.)

- 2차 개정 경위
 - 1차 개정 후의 경과
 - 환경 변화
 - ICO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급성장 등 투기거래의 확대
 - 수탁업 규제의 필요성
 - 가상통화 유출사건 등 업무처리 관련 규제 공백
 - 2018. 3. 금융청 산하에 민관합동의 '가상통화연구회' 설치
 - 2018. 10. '가사통화교환협회'를 자율규제단체로 인정
 - 2018. 12. 가상통화연구회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하여 관련 법 개정 권고
 - 2019. 5. 개정안 국회 통과

6

■ 자금결제법

- 정의 규정
 -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 변경
 - 정의 내용은 동일
 -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전자 기록 이전 권리' 표시 제외
 - 암호자산 교환업에 암호자산 수탁업 포함 (2조 7항 7조 4호)
 - 이용자의 참여없이 단독으로 또는 관계 사업자와 협력하여 암호 자산을 이전 할 수 있을만한 개인 키를 보유하는 경우 등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이용자의 암호 자산의 이전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7

7

2차 개정 (2020. 5.)

■ 자금결제법

- 광고, 권유에 관한 규정 신설 (63조의9 2항, 3항)
 - 광고시 표시 의무
 -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암호자산이 본원통화 또는 외국통화가 아 니라는 사실
 - 암호자산의 성격
 - 암호자산의 가치 변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
 - 대가의 지급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가 변제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 광고 관련 금지 행위
 - 허위 표시 또는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 지불수단 사용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목적으로 암호자산의 매매 등을 조장하는 표시
 - 이용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8

■ 자금결제법

- 이용자 보호 강화
 - 암호자산의 성격에 관한 설명 규정 추가
 - 암호자산 신용공여시 정보제공의무
 -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금전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신탁회사 등에 신탁 의무화(63 조의11 1항)
 - 이용자의 암호자산의 분리 관리(63조의11 2항)
 - 이용자의 암호자산 중 95% 이상을 콜드월렛(한번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월렛) 제3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
 - 이용자의 편리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핫월렛에 보관하는 암호화자산의 경우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암호자산(이행보증 암호자산)을 보유, 분리 관리
 - 이용자의 암호자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9

9

2차 개정 (2020. 5.)

■ 자금결제법

- 암호자산 교환업의 등록거부 사유 추가 (63조의 5 1항 6호)
 - JVCEA에 가입 및 자유규제규칙에 준하는 사내 규칙의 작성 불이행
 - 이행보증 암호화 자산의 금액 이상의 순자산 미보유
- 취급 암호화 자신의 명칭 또는 암호자산 교환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 (63조의6 1항)

■ 금융상품거래법

- '전자 기록 이전 권리' 개념 도입 (2조 3항)
 - 2조 2항에 규정된 간주 유가증권 중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또는 기타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것에 한 한다)에 표시되는 것(기타 유통 상황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1종 유가증권으로 취급
 - 주권, 사채권 등의 1종 유가증권을 디지털 토큰에 표시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1종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
 - 집합투자스킴(2조 2항 5호, 6호)에 의한 발행 예상
 - 집합투자스킴: 금전 등 출자 & 수익의 배당 또는 재산의 분배
-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 (2조 24항 3호의 2)
 - 암호자산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또는 매개, 중개,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의 등록 필요
 - 암호자산의 가격 또는 관련 이자율도 금융지표에 추가

11

2차 개정 (2020. 5.)

■ 금융상품거래법

- 규제 강화
 -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별도의 장을 신설
 - 부정행위, 풍설유포,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조치 등 관리체계 정비
 - 내부자 거래는 미포함
 - 광고표시 방법 규제
 - 암호 자산은 본국 통화 또는 외국 통화가 아니며, 암호 자산은 대가의 지급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표시 (일 부령 76 조 3 호)
 - 과대 광고 금지
 - 정보제공의무
 - 암호자산의 가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취지 및 이유
 - 암호자산의 개요 및 특성
 - 증거금 규제

12

-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암호자산취득 행위를 금융상품 거래에 포함 (2조 6항 3호)
 -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3조)
 -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 (4조)
 - 금융 상품 판매업 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5조)
 - 위 의무 위반시 손해를 배상 책임
 -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13

13

Thank you

jay.yoon@leeko.com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위원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